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승의학원(승의여자대학교)의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예산서·운영예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승의학원(승의여자대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승의학원(승의여자대학교)의 202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자산의 검토

별첨: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2호서식)

2. 승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의 검토

3. 승의대학교 결산서의 검토

별첨: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별지 제3호서식)

2020년 4 월 일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 김 학 선(인)

감사 박 동 진(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11556호)

피감사자 (임회인)

승의여자대학교

총무처장 박 경 호(인)

승의학원

총무과장 홍삼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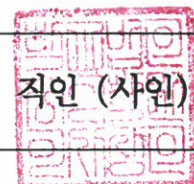
학교법인 승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자산의 검토</p> <p>가. 당 승의여자대학교의 일부 실습관, 체육관, 유치원(현 교회), 식당, 학생회관이 공사가 진행 완료되어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관계 기관에서 준공 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진행되지 못함.</p> <p>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요청</p> <p>2. 이사회 조직이 학원 정관에 맞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이사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음.</p> <p>3. 이사회는 규정대로 항상 7일 이전에 항상 소집되었고, 회의 진행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음</p> <p>4. 이사회 회의록 작성은 규정대로 되어 있으며, 참석 위원들의 서명이 잘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공개되었음</p> <p>5. 이사회 소집 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의안이 부의되어 심의 의결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음</p> <p>6. 각 학교에서 제청된 교원 임면 및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정관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되었음</p> <p>7. 이사회 안건 중 위원의 제척 사유가 될 만한 것은 없었음</p>	<p>1. 승의여자대학교 미등기자산 시정조치계획</p> <p>가. 당 승의여자대학교의 미등기자산의 경우 1965년부터 1984년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관할청의 건축 허가로 건축한 건물이지만 건물 준공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물 부지 위치가 풍치지구인 관계로 건물 준공 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등기 절차도 이행하지 못하였음.</p> <p>미등기자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임</p> <p>본 지적건이 포함된 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020학년도 입학정원의 5% 모집정지)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미등기자산의 권리 관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p>2. 특이사항 없음</p> <p>3. 특이사항 없음</p> <p>4. 특이사항 없음</p> <p>5. 특이사항 없음</p> <p>6. 특이사항 없음</p> <p>7. 특이사항 없음</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승의학원 이사장
윤순희



직인 (사인)

승의여자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

2019회계연도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학교 교비회계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
<p>1. 승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의 검토</p> <p>가. 승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상 예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조제3호 예산편성요령에 따르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p> <p>나. 승의대학교 예산 및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승의대학교 결산서상 건축물관리비의 지출 내역이 실제 유형자산의 취득 성격(환경개선공사비, 철골천정공사비, 창호공사비)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시 건축물관리비 성격과 유형자산 취득의 성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2. 승의대학교 결산서의 검토</p> <p>가. 승의대학교 결산서상 유형자산의 취득시기를 매결산시점에 건설가계정에서 본계정으로 대체하여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p> <p>학교회계의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르고 만약 동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에서 규정 하지 않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p> <p>일반기업회계기준상 질의회신 01-150 처분손익 실현 기준일 (1) 잔금청산일 (2) 소유권이전등기일 (3) 사용하기로 약정한 날</p> <p>나. 승의대학교의 경우, 해당 자산이 취득 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지만 당 승의대학교의 경우 잔금 청산시점이 각 case마다 상이한 바, 승의대학교의 유형자산 취득시기를 최종 검수완료한 일자를 근거로 유형자산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p>	<p>1. 결산서상 환경개선공사비, 철골천정공사비 창호공사비의 유형자산의 취득성격 여부</p> <p>가. 각 공사가 공정별로 진행되었고, 자본적 지출에 대학 세부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나. 기존 건물의 감가상각 잔여연수가 1년남아 유형자산으로 대체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과 건축물 관리비로 비용처리 하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다. 유형자산으로 대체시 건물의 실질적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p> <p>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과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할 부분을 나누워 처리하였음. 향후 공사시 유형자산 취득으로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더 깊이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음.</p> <p>2. 유형자산의 취득시기를 건설가계정에서 본계정으로 대체시 결산시점에 인식함</p> <p>가. 잔금 청산시점이 각 case마다 상이하고 최종 잔금 지급이 결산에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고, 나. 결산 시점에 유형자산에 취득 시기를 인식 하여도 감가상각비의 비용 인식 금액에 차이가 없음.</p> <p>향후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 될시 최종 검수완료 확인서를 수령하여, 그 시점에 유형 자산 취득으로 인식하도록 하겠음.</p>

피감사기관장

승의여자대학교

총장

구건서

직인 (사인)

